#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- 161호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「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

#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('15.8월)」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여신 전문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# 2. 주요 내용

# 가. 금전제재 관련 제도개선

- ①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(안 제58조)
  -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,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
  - 대주주와의 거래한도(신용공여, 주식 보유) 위반에 대한 과징금
   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%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

-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(또는 초과 취득한) 부동산 취득가액의 30%로 부과방식을 변경
- 2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(안 제72조)
  -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
  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('16.9.30일 시행)에서 3천만원과
   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
  - ㅇ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한도 5천만원)
  -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금융 감독원장에 위탁
- ③ 제재시효 제도 도입(안 제53조의4)
  -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\*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
    - \*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,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

# 나.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

-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"신기술사업자"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(안 제2조)
  -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(안 제45조)

- 2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(안 제36조)
  - 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
    - \*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
- ③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(안 제 6조)
  -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
    - \* 금융투자,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

### 3. 의견제출

-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16년</u> <u>7월 11일까지</u>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중소금융과, 전화 : 02-2100-2992, 팩스 : 02-2100-2999, 이메일 : yangbg84@korea.kr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 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- 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